공고 제2025 - 1168호

2025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청년 초기 창업자들에게 창업점포 임차료를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해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1.

충 주 시 장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7월 ~ 2026. 6월 (1년간 /예정)

❍ 사 업 량 : 50개소

❍ 사업내용 : 점포 임차료 지원(최대 1년간, 최대 30만원/월)

❍ 사업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	대상자 심사	→	최종 선정	→	사업 개시	→	사업 정산
참여자 모집		자격요건심사 정량심사		대상자 최종 선정		(청년) 월세납부 (시) 분기별지급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

(*1985. 05. 22. ~ 2006. 05. 21. 출생자)

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개업연월일 기준)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신청하는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업종무관)

※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함.**

❍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임차료를 지원받는 자, **충주시 청년몰 입점자**
- **공고일 현재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건강보험 등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붙임2]**
- 유흥·향응·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휴폐업 신고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소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가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자(예: 전대차)
- 임차료 이체내역 증빙이 불가한 자(현금거래 등)
-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온라인영업), 지방세 등 체납자
-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타인명의 사업신청, 청년본인 미운영 등)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및 가설건축물
- 기타 충주시 판단 의거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점포 임차료 지원(1년간 / 최대 360만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임차료(월세)의 50% 이내 지원(최대 30만원)**

- 실 납부액 기준, 선정 이후 월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인 월세 지급내역 확인 후 청구, 분기별 지급**

- 보조금 결정 이후부터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서만 지원
-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시된 계약기간 내에 한하여 1년간 지원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 임차인(신청인) 성명, 월세금액이 일치해야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중 임대차계약 내용(소유주, 임차료 등)이 달라질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선정자)제출서류 : 1) 보조금(지원금) 신청서 2) 매출증빙서류(영업여부 확인용)
  3) 임차료 지출증빙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 실제운영여부 확인을 위해 **보조금 지급신청시 월별 매출증빙자료 포함**제출

※ 임차료 이체확인은 계좌이체확인증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가족 및 제3자거래 및 현금거래 불가)

Ⅱ 신 청 방 법

❍ 신청기간 : 2025. 05. 21. ~ 2025. 06. 04. 18시까지 [근무시간중]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방문접수 :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 이메일 제출 : havehot@korea.kr [제목: 청년창업임차료 지원신청(상호명)]

(송부 후 담당자 확인 필수 043-850-6015)

❍ 제출서류 : ※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 고시공고 → 서식 다운로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사업 신청시	1.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3.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서식3
	4. 서약서	서식4
	5.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 내역) * 신청 후 3시간 소요	*홈텍스 발급
	6.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텍스 발급
	7.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주소이력 전부)	*정부24 발급
	8.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2024년기준/전국/재산세, 배우자포함)	*정부24 발급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자 : 배우자 기준 각각 발급	대법원
	10.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정부24 발급
	1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상 점포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만 인정 (전대차 인정 불가)	
	13. 건축물관리대장	
	14. 통합위임장(공동사업자일 경우)	서식5
사업 선정자 (보조금 신청)	1. 사업비 교부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매출증빙자료	
	5. 월세 이체확인증	
	6. 통장사본	
	7. 통합위임장	
추가 (해당자)	* 공동사업자일 경우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중(2~5, 7~11) 각각 모두 제출	

※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환수)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③ **이메일 제출시 제출서류 순으로 정렬하여 접수 요망**

④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Ⅲ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및 기준 : 자격요건 심사 후 정량평가**

❍ 1차 심사 : 자격요건(연령, 주소지, 임대차 관계, 지원제외 대상 여부, 중복참여 등)

❍ 2차 심사 : 심사표 활용 정량평가 * 필요시 현장확인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 고득점 순으로 50명 선정
- 심사지표

평가항목	지방세(재산세) 납부현황	충주시 거주기간	월임차료	사업기간	보증금
배점(100)	25	25	20	20	10
감 점(-3)	▸ 프렌차이즈 가맹점 운영자				
감 점(-5)	▸ 충주시(건축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2025년 충주시 점포환경개선 청년분야 선정자 ▸ 무인점포 운영자				
동점시 기준	▸ 충주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지방세 납부현황 :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상 납부 세액(종세 포함) 기준(배우자 합산)

※ 충주시 거주기간 : 충주시에 최종 전입한 날로부터 공고일까지 연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주민등록 초본 기준)

※ 월 임차료,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준

※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평가항목 중 “지방세 납부현황”과 “거주기간”은 각 대표자의 평가 점수의 평균값 적용(소수점 버림)**

- 선정결과 : 2025. 7월 중 개별 문자통보(예정)

※ 선정여부는 개별통보되므로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기재

※ 선발인원 이내라도 미적격자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Ⅲ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 및 최종선발 이후라도 지원제외(환수)될 수 있음

❍ 공고사항 또는 추진일정은 충주시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지원중지 및 환수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시
- 허위·위법·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전액환수)
- 사업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 휴·폐업 및 사업장주소 전출 시

※ 예외 : 천재지변 및 타의(질병, 사망 등) 에 의한 강제적 폐업인 경우(증빙자료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중지함.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미이행, 규정위반이 등이 발생된 경우

❍ 기 타

-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의 판단에 따름.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지원사업』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출자료 목록 (공고일 이후 발급분)	확인란
1. 지원신청서(제1호서식) * 사업장사진 첨부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서식)	
3.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제3호서식)	
4. 서약서(제4호서식)	
5.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공고일기준 신청사업장외 다른 사업자등록 있으면 제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주소이력 전부)	
8.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2024년) (전국/재산세/배우자기준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기준 포함)	
10.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완납 증빙 필요/체납, 미납 인정불가)	
1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공고일기준 취업여부 확인)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상 점포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만 인정(전대차 불가)	
13.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대상일 경우 지원 제외	
14. 공동사업자일 경우 통합위임장 제출(제5호서식)	
15. 감점 해당 여부(유사사업 수혜) -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 □ - 무인점포 운영자 □ - 충주시(건축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원중인 자) □ - 2025년 충주시 점포환경개선 청년분야 선정자 □	해당시 체크
(해당자) * 공동사업자인 경우 - 제출서류 중(2~5, 7~11) 각각 모두 제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업체명: 대표자명 : (인)

[제1호 서식]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사업장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업 종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 연·월·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 해당 □ 해당없음		
	임 차 료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인과의 관계	※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인 경우 신청 제외
타 사업 참여이력	참여여부		타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이력 등 현황 기재	
	□ 있음 □ 없음		(지원사업)	(지원내역)
	□ 충주시 건축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 2025년 충주시 점포환경개선 청년분야 선정자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4. 서약서 5.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주소이력 전부)	8.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2024년 기준/전국/재산세/배우자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기준 포함) 10.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3. 건축물관리대장 14. 통합위임장(공동사업자일 경우)

※ 공동사업자일 경우 2~5, 7~11 제출서류 각각 모두 내야 함.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서식 계속]

1.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외부 사진) / 매장 외부전면, 간판이 보이게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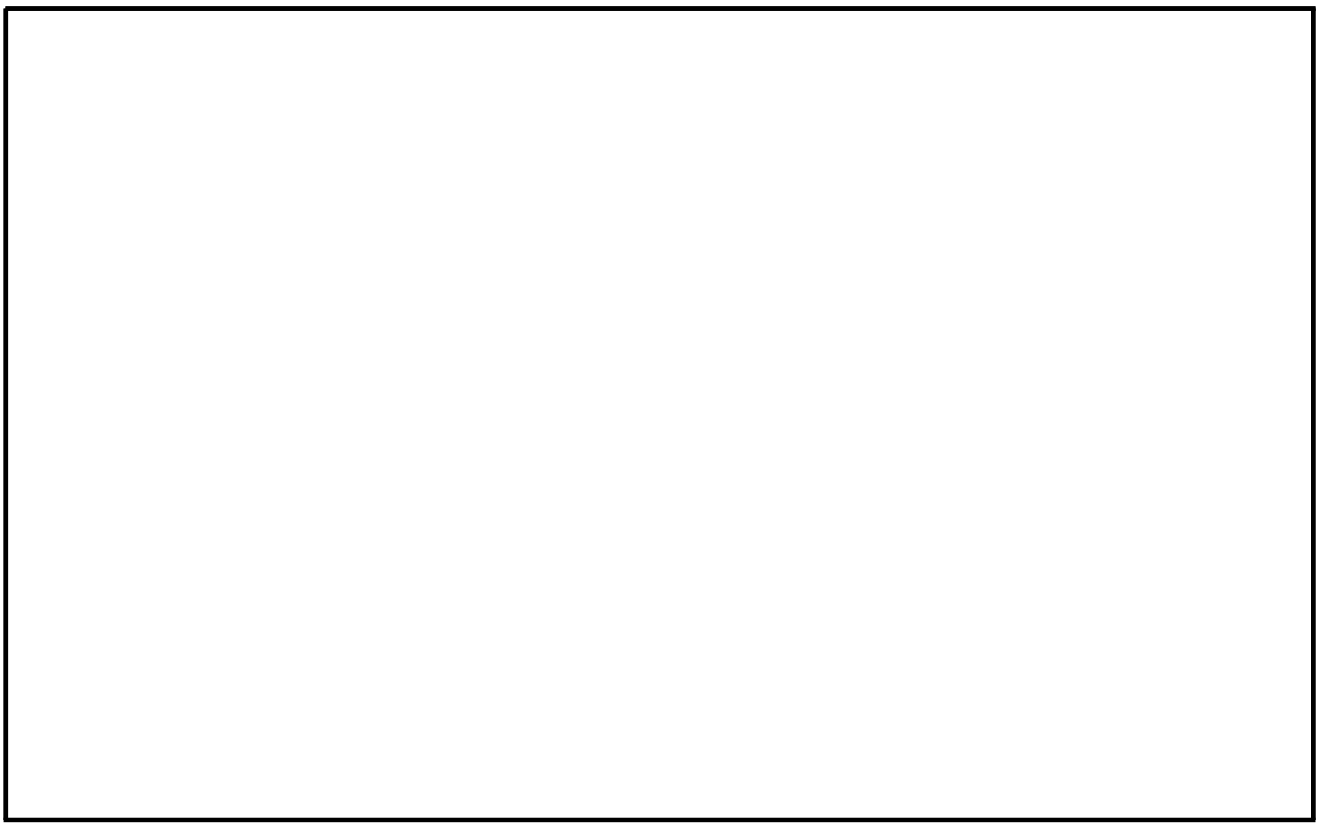

2. 사업장 모습 (현재 사업장 내부 사진) / 매장 내부 전면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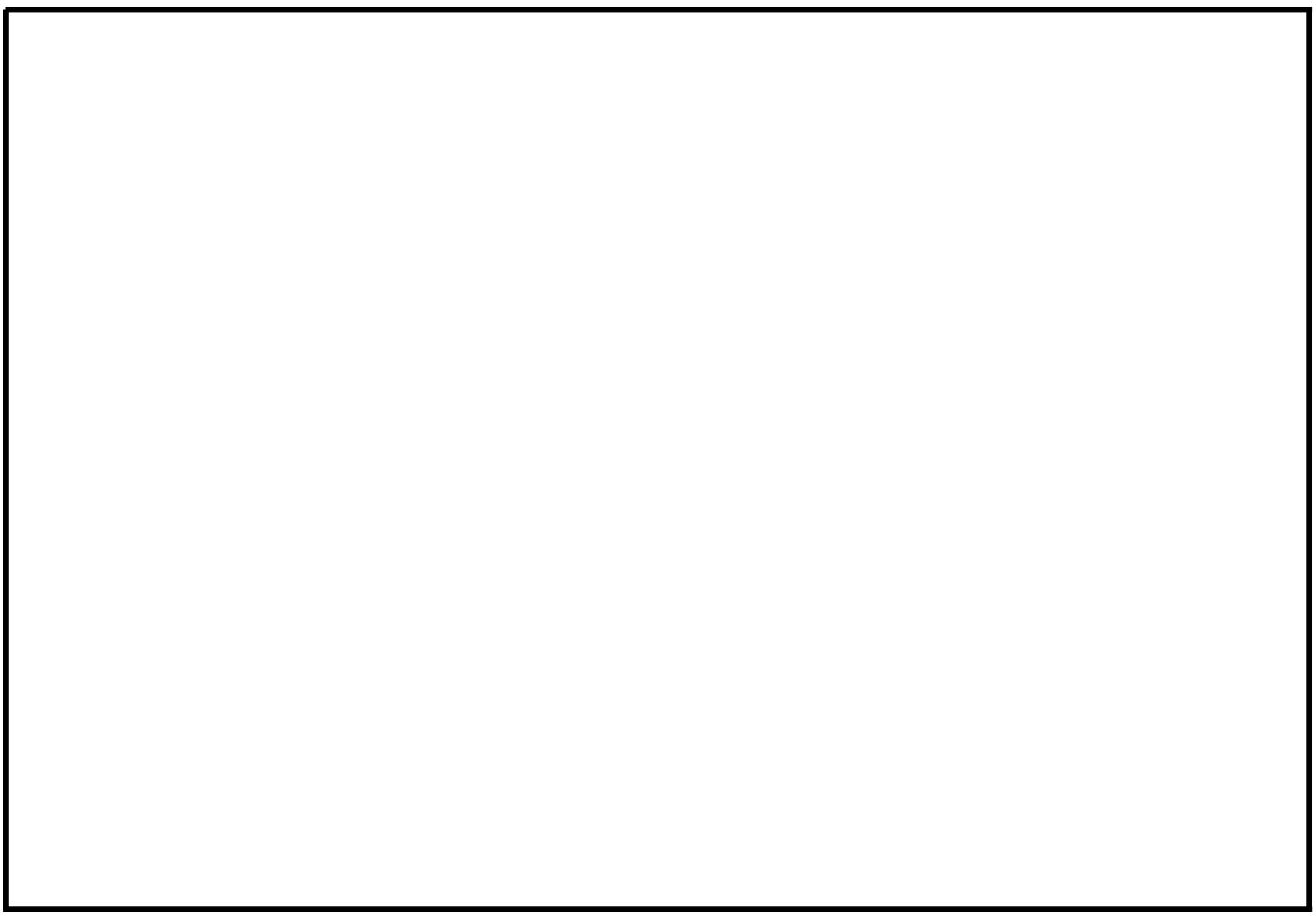

[제2호 서식]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지원 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신청, 수혜정도 등

③ (과세정보)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지원 사업 종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충주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행정목적 실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수행업체,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_____ (인)

충주시장 귀중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충주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지원사업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7	건축물대장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미작성 시 구비서류 발급이 불가하며, 구비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발급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제4호 서식]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지원 사업』 참여서약서

1.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선발자는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충주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 **지원 중단 사유**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사업기간 내 사업장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을 휴·폐업하는 경우
> · 허위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급신청서를 작성 또는 제출한 경우
> ·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기타 사업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4.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선발 취소되거나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 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합니다　　□ 서약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제5호 서식]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지원사업』
통 합 위 임 장

(공동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내용			
신청금액	(월)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권한을 위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사유	**공동사업자**		
권한을 위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내용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지원 신청 등 일체)

2025년 월 일

위임하는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중

붙임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2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임차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정책자금 제외업종 준용]

중분류	표준산업 분류	업종
기타제품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보험 및 연금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중분류	표준산업 분류	업종
보건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